



일반 독일어 단체반 수업 에 대한 계약조건

1. 수업료 에는 강의비, 장소제공 과 행정 사무 비 가 포함되어 있다. 또한 처음에 입학 할 때 추가해서 등록비 를 30€를 받으며 이것에 복사비, 증명서, 시험과 졸업증명서 가 이에 해당한다. 교재는 학생들이 사야한다.
2. 처음 각 수업을 신청할 때 선불로 130€를 내야 한다. 이것은 만약에 분할 금을 낼 때에 마지막 분할 금에 계산된다. 이 선불금은 각 수업에 참석할 수 있는 보증이며 이 요구는 수업 신청자가 수업 처음 시작 때에 출석치 않으면 소멸된다.
3. 수업료(- 선불), 분할금은 늦어도 처음 수업 시작하는 날까지 지불 해야 한다. 분할금은 배우고 있는달 4번째 주에 다음달 것을 내야 한다.
4. 강의 기간은 4 주이며 1개월 전체가 아니다. 수업은 휴일 이나 축제일은 쉬며 보충되지 않는다. 예외는 한달 강의 중 2일 이상 휴일인 경우이다.
5. 만약에 단체반 수업이 참가학생 수가 적어서 수업 반이 이루어 지지않으면 학생들은 같은 가격의 학생수가 적은 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해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그리고 납부된 선불은 바로 돌려 받는다.
가정해서 한 반에 참가한 학생수가 4명보다 적으면 효과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여 수업시간을 적게 한다(예: 3명= 12 수업시간, 2명= 8 수업시간).
가정해서 한 반에 9명 이상이면 효과가 적은 수업인 것을 인정하여 학생들과 상의하여 수업시간을 늘린다.(15분 매일 추가된 인원수)
- 6.a 타당하지않은 이유로 계약기간 전에 해약을 하면 해약 금으로 입학금의 20%, 적어도 130€을 받는다. 만약에 해약이 6.b 에 해당되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계약상의 금액에 준한다.
- 6.b 해약은 계약 기간 중에는 원래 할 수 없다. 예외로는 학원에서 학생이 원하면 허락 할 수 있다. 해약할 수 있는 기간은 4 주이며 법적요구는 없다. 해약금은 수업료(입학금)의 20% 에 해당되며 적어도 130€이다. 예로 비자를 받지 못했거나 연장하지 못한 경우, 사망, 병환, 임신, 먼 곳으로 이사, 대학에 입학한 경우이며 해약은 서면으로 하고 의사의 증명서, 대사관이나 해당관청의 서류를 첨부한다.
6. c 수업의 날짜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하다. 수업시작(예약된) 1주일전에 통고한 경우이며 서로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과 관계자의 이름 과 날짜와 수업시간을 적어준다. 그렇지 않은 경우 한달 의 수업료를 계산한다.
7. 독일어 수업신청 시에 원하는 학생에게 증명서를 발부한다. 이 증명서는 강의 시작하는 달에 280€+30€ 를 낸 학생에 한한다.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 지지않을 때 예로서 비자문제가 있을 경우 수업을 나중에 받거나 수업신청을 적어도 수업 1주일전 까지 취소 할 수 있다 6번 참조. 그렇지 않은 경우 1개월치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.
8. 학생이 수업시간에 한번이나 여러 번 출석 않은 경우 수업료를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.
9. 모든 수업은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대학의 어학시험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주관 하는 외국어통신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다. 개인수업이나 회사를 위한 수업은 부가가치세 19%를 추가한다.
10. 만약에 수업이 학생의 요구에 의해서 학원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학원은 손해배상에 책임 지지않는다.

입장: 10월 2014년